

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-42호

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『방송법』 제73조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0년 4월 22일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1. 공고사유 :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근거 : 「국세기본법」 제11조(공시송달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
2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3. 공시송달 대상자

가. 과태료

No.	과태료 고지번호	체납자	체납자 실명번호	최초 부과 과태료 금액	체납자 주소
1	0178200004530000760	㈜한국여론방송	221-88-842** 110111-49716**	10,000,000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(장항동) 빛마루방송지원센터

4. 문의처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및 재정팀
(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(중앙동) ☎ 02-2110-1276, 1371)
5. 공고내용 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24조 및 『국세징수법』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귀하(사)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6. 가산금 및 증가산금 안내
가. 과태료
1)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2)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

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.

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『국세징수법』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라.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,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%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,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마. 과징금 및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 (www.giro.or.kr)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.